

(완료)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

① 정책사업명	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			
② 추진배경	유니세프한국위원회(인증심의) 권고사항에 따라 아동 비차별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아동 친화적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함			
③ 사업개요	○ 주요내용 - 아동 비차별의 구체적 요소 명시(안 제4조제1호) - 아동최선의 이익에 대한 명시(안 제4조제2호) ○ 신·구조문 대조표			
	현	행	개 정 안	
	제4조(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)----- 1.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. 2.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 제9조(아동 교육·여가·문화생활)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·여가·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.	제4조(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)----- 1. 모든 아동은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성별, 언어, 종교, 재산, 장애, 출생신분,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. 2.-----아동 최선의 이익을----- 제9조(아동 교육·여가·문화생활)----- -----참여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한다.		
④ 사업부서	복지환경국 가족정책과	⑤ 담당자	행정5급 진상록 사복8급 이동걸	
⑥ 선정기준	자치법규 제·개정	⑦ 사업기간	'21. 5. 27. ~ 6. 16.	
<그간 주요 추진내용>				
○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공보게재 요청	'21.05.21	안미향 가족정책과장 김윤지 아동친화드림주무관		
○ 「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성별영향평가 검토	'21.05.18	안미향 가족정책과장 김윤지 아동친화드림주무관 강광자 주무관		
○ 법제심사 의뢰(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	'21.05.18	안미향 가족정책과장 김윤지 아동친화드림주무관		
○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	'21.05.18	이동권 구청장 김정익 부구청장 이문걸 복지환경국장 안미향 가족정책과장 류성만 의회법무주무관 김윤지 아동친화드림주무관		